

서울중앙지방법원 2018. 12. 13 선고 2018가단5024113 판결 [연대보증금 청구의 소]

재판경과

서울중앙지방법원 2019. 9. 5 선고 2019나2611 판결

서울중앙지방법원 2018. 12. 13 선고 2018가단5024113 판결

전문

원고A

소송대리인 법무법인(유한) 대륙아주

담당변호사 김명호

피고B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태신

담당변호사 김주표

변론 종결 2018. 10. 18.

판결 선고 2018. 12. 13.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90,000,000원과 이에 대하여 2017. 6. 1.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3.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 구 취 지

주문과 같다.

판사정일예